

# 2023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경찰청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419명)

### □ 총괄 (65개 분야 총 419명 선발)

※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채용분야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학	인재개발원	중앙학교	수사연수원
총 계	419 (15) [2]	81 (3)	38 (3)	12	18 (1)	17 (1)	8	14	5	3	60 (3)	28 (1)	17	12	14	14	13 (2)	29 (1)	13	5	14	1	1	2
일반직 등 (14개 분야, 44명)	44 (1)	23 (1)			1	1	1	1			2	2	3			3		3	1	1	2			1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51개 분야, 375명)	375 (14) [2]	58 (2)	38 (3)	12	18 (1)	16 (1)	7	13 [1]	5	3	58 (3)	26 (1)	14 [1]	12	14	11	13 (2)	26 (1)	12	4	12	1	1	1

### □ 세부 선발인원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 ○ 일반직 등

연번	분야	직렬(직류)	계급	계	본청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1	송무담당	행정(법무행정)	6급	1				1									
2	범죄수익추적	행정(회계)	7급	2									1	1			
3	전기안전관리	공업(전기)	9급	3								1	1	1			
4	기계사업관리	공업(일반기계)	9급	2			1										1
5	검시조사	보건(보건)	9급	2		1			1								
6	영양사	식품위생(식품위생)	9급	2									1				1
7	건축관리	시설(건축)	9급	3							2		1				
8	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전산개발)	9급	6	2				1		2	1					
9	네트워크 관리	전산(전산개발)	9급	1											1		
10	운전	운전(운전)	9급	2	2												
11	디지털포렌식분야	공업연구사(전자)	6급상당	1	1												
12	지문감정	전문경력관	나군	3	3												
13	지문감정	전문경력관	다군	15 (1)	15 (1)												
14	군사업무	전문경력관	다군	1													1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임기는 2023.12.31.까지)

※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나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연번	분야	직렬(직류)	계급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찰대학	
15	데이터기반행정추진	통계(통계)	5급	1	1																	
16	국가.행정소송, 법률자문	행정(법무행정)	6급	2								1				1						
17	노무사	행정(고용노동)	6급	8	1	1			1	1	1	1	1							1		
18	사이버국제공조전담번역사	행정(일반행정)	7급	2	1	1																
19	182상담요원	행정(일반행정)	8급	3	3																	
20	시민인권보호관	행정(일반행정)	8급	4							1	1	1		1							
21	공익신고 영상분석	행정(일반행정)	9급	9		1		1	2		3		2									
22	언론모니터링 및 이슈대응	행정(일반행정)	9급	2				1					1									
23	검거장비 개발	공업(전기)	6급	1	1																	
24	화생방 안전	공업(화공)	7급	6		2							1				1	1		1		
25	경찰수련원 유지보수	공업(일반기계)	8급	2														1		1		
26	기동대 청사 리모델링	시설(건축)	7급	1	1																	
27	경찰수련원 유지보수	시설(건축)	8급	1														1				
28	패널연구	전산(전산개발)	7급	1																		1
29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전산(전산개발)	7급	1																		1
30	경찰관기동대 상황출동지원	운전(운전)	9급	3				1		1						1						
31	물자-경력 수송 및 차량관리	운전(운전)	9급	80 (2) [1]		9	6	4	5		3	9 (1)	6	8	4	5	2		5 (1)	13	1	
32	실용화촉진사업	공업연구사(산업경영)	6급 상당	1																		1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임기는 2024.7.31.까지)

연번	분야	직렬(직류)	계급	계	서울	대구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전북	경북	경남
33	수사지원 인력	행정(일반행정)	8급	74 (7)	16 (2)	4	2 (1)	36 (2)	8 (1)	1	3 (1)	4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임기는 2024.12.31.까지)

연번	분야	직렬(직류)	계급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학	인재개발원	중앙학교	수사연수원
34	국가경찰위원회 안전검토	행정(일반행정)	6급	1	1																						
35	청렴시민 반부패 청문관	행정(일반행정)	6급	4	4																						
36	여성폭력 2차 피해예방 담당	행정(일반행정)	6급	1	1																						
37	성평등 정책 분야	행정(일반행정)	6급	2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연번	분야	직렬 (직류)	계급	계	분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 대학	인재 개발원	중앙 학교	수사 연수원	
38	위탁교육 담당	행정 (일반행정)	7급	2	2																							
39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조사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40	치안상황 예산업무 지원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41	인터폴 국제공조 번역	행정 (일반행정)	7급	4	4																							
42	협력치안 운영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43	청렴시민 반부패청문관	행정 (일반행정)	7급	72 (3) [1]		6 (1)	4	4 (1)	4	3	3	3	2	6	4	4	4	4	4	5 (1)	5	5	2					
44	치안정책 홍보역량 강화	행정 (일반행정)	7급	20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5	비교경찰 연구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46	182 상담요원	행정 (일반행정)	8급	4 (1)	4 (1)																							
47	치안대학원 운영	행정 (일반행정)	8급	2																				2				
48	경찰청 SNS 운영 콘텐츠 제작	행정 (일반행정)	9급	1	1																							
49	언론보도 및 이슈 모니터링	행정 (일반행정)	9급	1	1																							
50	지문 DB 고도화	행정 (일반행정)	9급	16 (1)	16 (1)																							
51	디지털 콘텐츠 제작	행정 (일반행정)	9급	1				1																				
52	기체분자분석 장비 운영	공업 (화학)	7급	1																				1				
53	KOLAS 자격 획득유지	공업 (화학)	7급	2																				2				
54	3D프린팅 사업관리	공업 (일반기계)	7급	2																				2				
55	경찰청 지휘버스 운영관리	공업 (운전)	9급	1	1																							
56	마음건강증진	의료기술 (의료기술)	8급	1	1																							
57	순직공상 원스톱 지원	의료기술 (의료기술)	8급	1	1																							
58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전산 (전산개발)	7급	2	2																							
59	KOLAS인정 및 시스템 관리	전산 (전산개발)	8급	1	1																							
60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전산 (전산개발)	9급	1	1																							
61	물자 경력 수송 및 차량관리	운전 (운전)	9급	3										2							1							
62	법고충 감정 인력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7급 상당	1	1																							
63	멀티미디어 분석	공업연구사 (전자)	7급 상당	1	1																							
64	멀티미디어 분석	공업연구사 (화학)	7급 상당	1	1																							
65	현장 안전 우수장비 도입	공업연구사 (전기)	7급 상당	1	1																							

## 2. 응시자격

###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 9. 8.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7급 이상	8급 이하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2024년도부터 7급 이상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 구분모집요건 (장애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구분모집	지원대상	증빙서류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 <li>※ <b>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b>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li> </ul>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b>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b>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li> <li>-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li> <li>※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li> <li>※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li> <li>-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li> <li>※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함</li> </ul>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 명서  ※ 수급(지원) 기간 명시 필수

##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 9. 8. 예정) 기준]

###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학위 · 자격증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 범위】

- '경력'은 해당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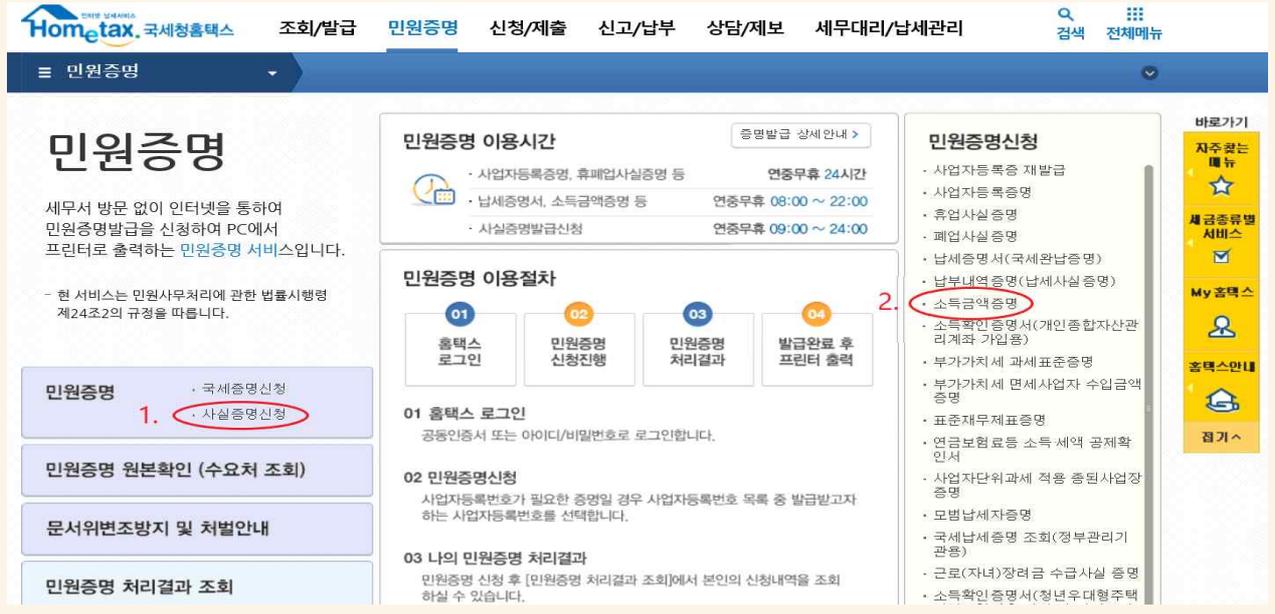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 은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경력만 인정되며, 직렬은 다르지만 같은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경력은 임용예정직렬과 업무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된 경우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 자격을 충족함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유의

**【우대요건 범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학위' 관련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배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상위자격 1개만 인정)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가산요건 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1급	2급	3급	4급	5·6급
가산점	3	2.5	2	1.5	1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가산특전)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는 4명 이상, 의사상자 등은 10명 이상 선발 단위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3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전문경력관 규정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4. 시험방법

###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응시자 비율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20배수 초과 ~ 30배수 이하	30배수 초과
서류합격자 비율	3배수	5배수	7배수	10배수

### ○ 서류전형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 ② 직무수행계획서
- ③ 우대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붙임1 참조
- ④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기준등급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5. 시험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6. 7.(수) ~ 6. 20.(화)	6. 19.(월) ~ 6. 23.(금)	8. 10.(목)	8. 17.(목) ~ 9. 8.(금)	9. 27.(수)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기관 홈페이지 및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 기간 : '23. 6. 7.(수) ~ 6. 20.(화) 18:00 <13일간>

※ 접수취소기간 : 6. 7.(수) ~6. 20.(화) 24:00

-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는 1회(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거주지 제한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15조)
  -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 수수료 : 5급 이상 1만원 / 6·7급, 연구사, 전문경력관 7천원 / 8·9급 5천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3. 7. 3.(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 '23. 6. 19.(월) ~ 6. 23.(금) 18:00 <5일간>**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 등기우편 접수 : 제출 마감일(6. 23. 18시)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 방문접수시간 : 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본청 응시자는 청사 정문 안내실 공사로 인해 서류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기급적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기한 내 응시한 소속기관으로 제출**
  - ※ 소속기관 주소 : [붙임2.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조하여 타기관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8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 제출서류 안내

### ○ 공통서류(필수제출)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4매 이내로 작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6. 주민등록 초본 1부	◦ <b>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b>

###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1. 관련 자격증 1부	◦ 사본 제출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처명, 근무기간,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li> <li>◦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li> <li>◦ <b>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b></li> <li>◦ <b>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b></li> <li>※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로 같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li> <li>※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li> </ul>
3.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공 분야 표시(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b></li> <li>◦ 국외 학위의 경우 전공이 명확해야 하고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공증서 첨부</li> </ul>
4. 관련 분야 연구실적 요약서 및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당분야(공고연번 32, 52, 53번) 지원자에 한함</b></li> <li>◦ 연구논문 요약서 1부 &lt;별지서식 제6호&gt;</li> <li>◦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li> <li>※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KCI, SCI, SCIE, SSCI, A&amp;HCI, SCOPU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저자·교신저자·저서 포함, KCI등재후보지·학위논문·용역실적은 제외 (단, 공고연번 53번 분야는 KCI 학술지도 제외)</li> </ul> </li> </ul>
5. 관련분야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당분야(공고연번 32, 35, 43번) 지원자에 한함</b></li> <li>◦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li> <li>◦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하며, 상장 사본 등을 제출</li> <li>※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제출</li> </ul>

구 분	내 용
6. 외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분야(공고연번 45, 53-2번) 지원자에 한함</li> <li>◦ 공인어학시험 성적증명서</li> <li>※ 영어 : 토픽, 토익, 토플, 지텔프, 플렉스, 독어 : GZ, 플렉스, SNULT, TestDaF</li> <li>※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li> </ul>
7. 정보화 자격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8페이지 우대요건 참조)</li> </ul>
8. 한국사 자격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것에 한함</li> </ul>
9. 운전경력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분야 지원자에 한함</li> <li>◦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li> <li>※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될 수 있음</li> </ul>
10. 가산특전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특전 대상자 증명서류</li> </ul>
11. 장애인·저소득층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자에 한함</li> <li>◦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li> <li>※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수급(지원)기간 명시 필수</li> </ul>
12.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저소득층 해당자)에 한함</li> <li>◦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li> </ul>

※ 증빙서류 미제출하는 등 증빙하지 못한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7. 서류 관련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채용 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에 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8.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근무 기간

구 분		근무 기간
일반직 등	연번 1~14번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의거 정년(60세)까지 근무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연번 15~32번	임용일로부터 <b>2023. 12. 31.까지</b>
	연번 33번	임용일로부터 <b>2024. 7. 31.까지</b>
	연번 34~65번	임용일로부터 <b>2024. 12. 31.까지</b>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2023. 12. 31.까지인 연번 15~32번 직위**의 경우 임기종료 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정원의 개폐 등으로 임기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 보수 수준

-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 공무원(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 호봉이 결정됩니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봉 등급	적용대상	연봉 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5호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5,843천원	48,792천원
6호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4,993천원	37,784천원
7호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3,074천원	30,268천원
8호	8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3,829천원	24,657천원
9호	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4,437천원	-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추가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응시한 소속기관(붙임 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